Smiling Dalseo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-

제 안 설 명 서

2021. 4.

박정환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-

제 안 설 명 서

설 명 자: 박정환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먼저,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지역문화의 진흥과 달서구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·이용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□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○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,
안 제2조는 생활문화센터의 설치를 규정하였습니다.

○ 안 제3조와 제4조는 생활문화센터의 업무, 이용시간 및 휴관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,
안 제5조와 제6조는 시설의 사용신청 등, 사용의 취소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.

○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사용료 등,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, 반환을 규정하였고,
안 제10조와 제11조는 강사 등,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.

○ 끝으로, 안 제12조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**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**

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1년 4월 7일부터 4월 19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였으나,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□ **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**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·이용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인 바, 본 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(박정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00821034

발의일자: 2021. 4. 7.

발 의 자: 박정환,박종길,정창근,윤권근,김화덕,
안대국,배지훈,이성순,홍복조

1. 제안이유

지역문화의 진흥과 달서구민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한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·이용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,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나. 생활문화센터의 설치(안 제2조)

다. 생활문화센터의 업무, 이용시간 및 휴관(안 제3조~안 제4조)

라. 시설의 사용신청 등, 사용의 취소(안 제5조~안 제6조)

마. 사용료 등,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, 반환(안 제7조~안 제9조)

바. 강사 등, 관리 및 운영의 위탁(안 제10조~안 제11조)

사. 비용의 지원(안 제12조)

3. 제정조례안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역문화진흥법」

나. 비용추계: 비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8조에 따라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,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그 관할 구역 안에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활문화센터(이하 "생활문화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한다.

제3조(업무) ①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
2. 생활문화예술 관련 체험·창작 활동의 지원 및 정보 제공
3. 생활문화예술 관련 단체·동아리 활동의 육성·지원
4. 영화, 음악, 무용, 미술 등의 상영, 공연, 전시 등 행사
5.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이용시간 및 휴관) ① 생활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.

1. 평 일: 10:00 ~ 21:00

2. 토요일: 10:00 ~ 18:00

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

2.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

제5조(시설의 사용신청 등) 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사용신청 접수는 분기별로 하며, 분기 마지막 월 20일부터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용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20일부터 수시접수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

1. 공공질서, 미풍양속 등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

2. 시설 및 장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

3. 종교·정치·노동 등 집회행위 또는 제품의 선전·판매 등 상업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

4. 상습적 사용 취소 또는 안전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기존 사용자의 경우

5.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센터의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

제6조(사용의 취소) 구청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한 경우
2. 허가받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
3.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
4.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
5.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제7조(사용료 등)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자와 운영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1. 국가, 시, 구가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
2. 구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

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

1.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
2.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3.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

4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
5.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의상자·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

6.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우수 자원봉사증 소지자 (직전년도 연간 자원봉사 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인 자)

7.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장기기증 등록자 및 기증자

8.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 중 병역명문가증 소지자

9. 달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세 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아이조아카드 소지자

10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
③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1.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

2.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

3. 사용 및 수강 개시일 이전 또는 이후에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

4. 그 밖에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

제10조(강사 등)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.

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.

③ 자원봉사자와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또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관리 및 운영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,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제12조(비용의 지원)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3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민간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.

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 신청된 것으로 본다.

③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·운영되고 있는 달서구 생활문화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·운영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8호를 삭제한다.

제2조의3 및 제2조의4 조항 전부를 삭제한다.

제3조제1항 및 제3항 중 “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”를 “아트센터”로 한다.

【관 계 법 령】

□ 지역문화진흥법

제8조(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·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이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